

# 「특허·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」 개정사항 안내

## □ 주요 개정사항 ('25.1.1. 시행)

### ① 심사순위 예외사유 추가 (제20조제1항)

- 심사순위 예외에 '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' 추가

### ② 분할출원 심사순위 변경 (제20조제1항, 제21조제1항·제2항)

- 분할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하도록 변경

※ '25.1.1.이후 착수되는 출원건부터 적용

### ③ PPH출원의 심사착수기한 단축 (제66조제1항제2호)

- 심사착수기한을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3개월(기존 4개월)로 단축

※ '25.1.1.이후 우선심사신청된 출원건부터 적용

### ④ 재심사출원의 심사착수기한 규정 삭제 (제55조제1항)

- '25.4.1.이후 재심사출원의 심사착수기한을 6개월(기존 1개월)로 변경

※ '25.4.1.이후 재심사 착수되는 출원건부터 적용(예정)

붙임 2. (특허청 훈령 제1191호) 특허·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

3. 조문별 제개정이유서(특허·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)